공 개

의안번호	제 11 호
보 고 연 월 일	2025. 3. 18. (제5차)

보고사항

2025년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실태평가 보고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3. 18.

1. 보고주문

’25년도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금융유관기관의 명시적 규제 및 비명시적 규제 등과 관련하여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의 준수여부를 보고한다.

2. 보고이유

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20조제1항에 따르면,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연도 3.31일까지 외부기관을 통해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금융유관기관의 동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바, ’2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골자

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은 적절히 준수되고 있으며, 향후에도 철저한 금융규제 원칙·절차 준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□ 평가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목록 : <붙임1>

□ 금융행정지도 현황 : <붙임2>

□ 금감원 감독행정작용 현황 : <붙임3>

□ 관련 규정 : <붙임4>

□ 2026년도 제5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3.12.) 심의필

1 추진 개요

□ **[근거]**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20조에 따라 매년 **외부기관**을 통해 동 규정의 **준수여부 평가** 및 금융규제 관련 **개선·보완** 추진

□ **[경과]** "2025년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**실태평가**" 연구용역 실시

○ **용역기간** : '26.1.1. ~ 2.28.

○ **수행기관** : 사단법인 한국행정연구원

○ **실태평가 주요내용**

- **명시적 금융규제***, **금융행정지도**, **감독행정작용**의 원칙 및 절차 준수 여부

* 법령 등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, 그 위임을 받은 고시 등)에서 정하는 금융규제

- **옴부즈만**, **금융현장소통반** 등 금융규제 **상시개선체계 운영실태**

*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상 실태평가 점검항목

구분	점검항목	
명시적 금융규제 (법령 등*에서 정하는 금융규제: 제2조 제3호) *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,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	**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** (제4조)	**원칙허용·사후규제 원칙**(제②항 제1호)
		네거티브 원칙(제②항 제2호)
		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(제②항 제3호)
		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(제②항 제4호)
		국제기준 정합성(제②항 제5호)
	절차 (제5조~제6조)	**의견청취 및 자체규제심사 절차 준수 여부**
금융행정지도 (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해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작위·부작위를 지도, 권고, 조언하는 행위: 제2조 제4호)	**금융행정지도의 원칙** (제7조)	**금융회사 내규 반영요구 금지**(제③항)
		불이익 조치 금지(제④항)
		내부경영사항(인사·금융상품 등의 가격·배당) 개입 금지(제⑤항 및 제⑥항)
	절차 (제8조~제13조)	**의견청취 및 등록·공개**(제9조 및 제12조)
		(금융위) 금융행정지도심의위원회(제9조의2)
		(금감원) 금융위 사전보고, 금감원 심의위원회(제10조 및 제11조)
감독행정작용 (법령등의 준수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 또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: 제2조 제5호)	**원칙** (제16조)	**금융행정지도와 동일**
	절차 (제16조)	**금융위 소관과 사전통보 및 등록·공개**
금융규제 상시개선체계	**옴부즈만**(제18조) **및 현장소통반**(제19조) **활동**	

□ **[대상]** ’25년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금융유관기관*(전국은행연합회)에서 제·개정된 명시적 금융규제**, 금융행정지도, 감독행정작용, 자율규제 및 상시개선체계

* ’23년부터 금융규제 실태평가 대상에 금융유관기관 1곳 선정하여 평가실시 (’23년 금투협, ’24년 여전협, ’25년 은행연)

**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상정 안건 기준

구분	금융위	금감원	은행연	계
명시적 금융규제	28건	3건	-	31건
금융행정지도	4건	17건	-	21건
감독행정작용*	-	4건	-	4건
자율규제	-	-	20건	20건
금융규제 상시개선체계	옴부즈만회의(4회 개최), 금융현장소통반 활동(33회)			

* ’25년 중 신규로 시행된 감독행정작용은 4건, 기존 29건 포함 총 33건 시행 중

2 평가 결과

□ **[총평]** 평가대상 모두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상 관련 규정을 준수

□ **주요 항목별 평가결과**

가. 명시적 금융규제 관련

❶ (원칙 준수여부) 금융위·금감원 소관 명시적 금융규제 **31건** 모두 **원칙을 적절히 준수**

❷ (절차 준수여부) 금융위·금감원 소관 명시적 금융규제 **31건** 모두 **의견청취 및 자체규제 심사 실시 준수**

나. 금융행정지도 관련

❶ (원칙 준수여부) 금융위·금감원 소관 금융행정지도 **21건** 모두 **원칙을 적절히 준수**

❷ (절차 준수여부) 금융위·금감원 소관 금융행정지도 **21건** 모두

의견청취 및 기타절차를 **적절히 준수**

- 운영규정 제9조에서 규정한 **의견청취 절차를 충실히 이행**
-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 4건 모두 내부심의위원회 **심의 절차 준수**
- 금감원 소관 행정지도 17건 모두 **금융위 사전보고** 및 내부심의위원회 **심의 절차 준수**

❸ (필요성 및 효과성 평가*) **'25년 주요 금융행정지도**로 **「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」**을 선정, 이에 대한 **필요성** 및 **효과성 평가** 실시

*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20조 제2항('19.1.30. 시행)에 따라 기획조정관은 실태평가시 **주요 금융행정지도를 선정**하여 그 **필요성 및 효과를 검토**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

<「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」 주요내용>

○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해석의 규준을 제시*

*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 정의, 핀테크기업 출자 허용, 승인 절차 운영 등

- **(필요성)** 본 행정지도는 최근 금융분야에서 **디지털 전환에 따른 핀테크 산업의 중요성**을 고려할 때 **신속한 지원**을 위하여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
- **(효과성)** 본 행정지도를 통해 **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·소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**함으로써, 향후 **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**하는 효과를 기대

다. 감독행정작용 관련

❶ (원칙 준수여부) **4건 모두 감독행정작용 원칙 준수**

- **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용**토록 하고 있는 바, 해당 원칙을 **모두 준수**

❷ (절차 준수여부) **4건 모두 감독행정작용 절차 준수**

- 4건 모두 시행 전 금융위 사전통보 등 **관련 절차 준수**

라. 상시개선체계 관련

❶ (옴부즈만) **전문성·독립성**을 가진 **외부 옴부즈만**을 위촉하여 금융규제 **상시 점검·정비** 및 **현장수요 중심의 규제개선 체계** 구축

- 각 업권별 민간 전문가로 **제5기 금융위 옴부즈만**을 **구성**[*]**하여** ('24.8.), **금융소비자 중심**의 **현장소통**을 **지속·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발굴** 추진[**]

* 총 22건의 건의과제를 심의하여, 이 중 7건을 수용하여 개선방안 마련

** (주요 개선사례)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 상향,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가입 편의성 제고 등

❷ (금융현장소통반) **금융위·금감원 합동**으로 **현장**의 **목소리**를 **청취**하여, **금융현장 중심**의 **규제개혁 추진체계**를 **구축**

- '25년 중 총 33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총 27개 단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약 201명과 면담을 진행

- 이를 통해 제도개선 8건, 금융관행 개선 1건 등 총 9건에 대해 추가 검토[*]

* (주요 개선사례)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신설, 유관기관 금융사고 점검 등

❸ (교육) 금융위·금감원은 **'25년 중**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준수를 위한 **교육을 실시**[*]

* 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제21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교육 의무화

- **금융위**는 **총 2회**, **금감원**은 **총 3회 교육**을 실시

3 향후 계획

◆ 철저한 금융규제 **원칙 준수**와 **절차 운영이** 지속될 수 있도록 **관리·점검**에 만전

□ (**금융위·원**) 명시적 금융규제·행정지도 **원칙 및 절차 준수**를 **면밀히 점검**하여 **신뢰받는 규제행정** 실현

○ 자체규제심사, 행정지도 심사시 **모범사례·안건 작성 매뉴얼** 공유 및 **미흡사항 개선·보완 수시 요청**

○ '26년 「**금융규제 운영규정**」 **교육**시 관련 내용 적극 안내

□ (**금융유관기관**) 자율규제기관 등 **금융유관기관**의 **금융규제 운영 현황**을 **지속**적으로 **점검**하여 **관리 공백 최소화** 도모

○ 실태평가 대상 금융유관기관의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

붙임1 **평가대상 명시적 금융규제 목록**

연번	신설·강화 법령명·규제사무명	구분	의견청취	규제영향 분석서 공개
1 금융위원회 소관				
1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2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3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4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5	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6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7	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8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9	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10	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	시행령	O	O
11	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12	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13	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14	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15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16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17	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18	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19	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20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21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22	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23	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24	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25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26	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27	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	고시 등	O	O
28	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	시행령	O	O
2 금융감독원 소관				
1	금융투자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	시행세칙	O	O
2	금융투자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	시행세칙	O	O
3	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	시행세칙	O	O

붙임2 **금융행정지도 현황**('25.12월말 기준, 총 21건)

연번	행정지도명	유효기간	의견청취	원칙준수
1 금융위원회 소관(4건)				
1	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	2026-01-31*	O	O
2	「스트레스 DSR 관련 행정지도」	2026-04-15	O	O
3	「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」	2026-04-15	O	O
4	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	2026-11-16	O	O
* 2026년 제1차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('26.1.29.)로 존속기한 연장('26.2.1.~'27.1.31.)				
2 금융감독원 소관(16건)				
1	보장상품의 보장금액한도 산정 가이드라인	2025-12-31*	O	O
2	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관련 행정지도	2026-03-01**	O	O
3			O	O
4	불법금융행위 예방을 위한 범금융권 공동홍보 협조요청	2026-03-16***	O	O
5	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	2026-04-03	O	O
6	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	2026-04-03	O	O
7			O	O
8	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	2026-03-31	O	O
9	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행정지도	2026-05-03	O	O
10	상호금융권 거액여신 한도관리 방안	2026-05-23	O	O
11	KOFR 준거 이자율스왑(IRS) 확산을 위한 협조요청	2026-06-30	O	O
12	CD 거래 확대를 위한 협조요청	2026-08-20	O	O
13	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	2026-08-31	O	O
14	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	2026-12-31	O	O
15	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	2026-12-29	O	O
16	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	2026-11-28	O	O
17	증권사의 사모신기술조합 투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을 위한 행정지도	2026-11-30	O	O

* 2025년 제6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('25.11.26.)로 존속기한 연장('26.1.1.~'26.12.31.)
** 2026년 제1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('26.2.26.)로 존속기한 연장('26.3.2.~'27.3.1.)
*** 2026년 제1차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('26.2.26.)로 존속기한 연장('26.3.17.~'27.3.16.)

붙임3 **금감원 감독행정작용 현황**('25.12월말 기준, 총 33건)

연번	감독행정작용명	시행일	관련법령
1	외화대출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	2016-03-31	은행법
2	보험상품개발 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감리결과 안내	2016-11-22	보험업법
3	보험설계사 모집 시 유의사항	2017-08-10	보험업법 등
4	'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' 구축관련 유의사항 통보	2017-12-29	보험업법 등
5	부동산·특별자산펀드 등 자문수수료 지급 관련 내부통제 보완 필요사항(개정)	2020-06-09 (2017-07-18)	자본시장법
6	집합투자기구의 총액인수수수료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 안내	2021-06-24	자본시장법
7	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시 유의사항	2023-03-27	보험업법
8	전자금융사고 최초보고시 유의사항 안내	2023-04-24	전자금융 거래법
9	화재보험 모집 및 인수시 유의사항	2023-06-01	금융소비자 보호법
10	신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및 소송 진행시 유의사항	2023-06-09	보험업법
11	특수집합투자기구 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	2023-06-13	자본시장법
12	불합리한 상품개발·판매 관련 유의사항	2023-07-19	보험업법
13	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(상호저축은행)	2023-08-16	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
14	장기기증 공여자에 대한 보험계약 인수시 유의사항 안내	2023-08-28	장기이식법
15	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(은행)	2023-08-28	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
16	소셜미디어에서의 평판 관리 참고사항 안내	2023-08-29	은행법
17	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(상호금융)	2023-08-31	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

연번	감독행정작용명	시행일	관련법령
18	금융거래정보 제출시 유의사항 안내(증권)	2023-09-11	금융위원회법 및 금융실명법
19	부당 보험계약 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 확인서 표준안 및 유의사항 통보	2023-10-24	보험업법
20	은행지주·은행 자체정상화계획 작성지침	2023-12-18	금융산업 구조개선법
21	보험계약대출 표준모범규준 관련 유의사항 통보	2024-01-18	보험업법
22	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심사 시 유의사항 안내	2024-01-24	보험업법
23	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	2024-06-20	자본시장법
24	익일 영업개시 전 외환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	2024-07-01	은행업법 등
25	기관 간 RP거래 최소증거금률 가이드라인	2024-09-02	자본시장법
26	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	2024-11-22	보험업법
27	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	2024-12-06	보험업법
28	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(개정)」 및 「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·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」	2024-12-23	외부감사법
29	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	2024-12-23	보험업법
30	반려동물보험 상품 설계 관련 유의사항 안내	2025-05-01	보험업법
31	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	2025-06-16	자본시장법
31	손해사정서 작성 가이드라인	2025-09-17	보험업법
33	예치 방식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기준	2025-09-24	전금법

붙임4 **관련 규정**

「금융규제 운영규정」 (국무총리 훈령, '15.12.31.제정 · '23.11.7.개정)

제20조(실태평가)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금융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·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평가하고, **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**해야 한다.

1.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
2.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 실태

②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. 다만,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
연 락 처	02-2100-2807